의성군의회 공고 제2021-40호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의성군의회의장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하면서, 조례안에 규칙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여 제정함에 따라 본 규칙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함

2. 주요내용

○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13일까지 의성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우편번호 : 37337】

의회사무과 (☎ 054-830-6391)

의성군 조례 제 호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8.12.22 의회규칙 제12호
(일부개정) 2016.09.29 의회규칙 제20호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6.09.29.>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2008.12.22 의회 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20호, 2016.09.29.>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의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